

- 사용부서의 채용신체검사 제출 안내 시, 혼선 방지
 - 라. 채용결격사유외 지방공무원법 준용으로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회 근거 규정 명확화(안 제10조)
 - 신원조회 시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근거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<http://www.share.go.kr>) 이용
 - 마. 공무원 근무성적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(안 제15조제2항)
 - 호봉제로 운영 중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활용도가 공무원 보다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평가횟수 조정함
 - 바. 정원표의 부서별 구분 정비(안 별표 1)
 - 푸른도시국, 안전총괄본부 및 산하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율 실 사용부서로 재배정
 - 사. 근로계약서 용어 정비(안 별지 제4호서식)
 -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 상의 ‘갑을(甲乙)’ 용어를 ‘사용자 및 근로자’로 대체
3. 의견제출
- 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‘18. 2. 7.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(참조: 조직담당관,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(☎ 2133-6735, FAX 2133-0822, E-mail : ramen777@seou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 - 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 - ※ 이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」 개정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-109호

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 및 보호구역 조정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 및 보호구역 조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월 18일
서울특별시장

- 1.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
 - 지정예정 종별 :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
 - 지정예정 명칭 : 봉은사 판전(奉恩寺 板殿)

○ 문화재 지정계획 대상 : 판전 건물 1동, 토지 1필지(총 210.7㎡)

지정대상	지번	지적(m2)	지정 수량·면적(m2)	소유자
봉은사 판전	강남구 삼성동 73	-	1동	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
토지 (판전 점유 부분)	"	61,428.0	210.7	
	합계	총 1필지	210.7	

○ 보호구역 지정계획 대상 : 토지 총 4필지(총 65,675.3㎡)

지번	지적(m2)	지정면적(m2)	소유자
강남구 삼성동 73	61,428.0	60,873.0	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
강남구 삼성동 73-1	1,722.2	1,722.2	
강남구 삼성동 73-2	2,765.4	2,765.4	
강남구 삼성동 73-3	314.7	314.7	
합계	총 4필지	65,675.3	

※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4호 “봉은사 선불당”의 보호구역과 같음

○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계획도면 : <별첨1> 참조

○ 공고 사유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“봉은사 판전(奉恩寺 板殿)”은 1856년에 창건되고 1878년 중수된 단층 맞배집 목조 건축물로, 봉은사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.
- 건물 내에 봉안되어 있는 ‘경기좌도광주수도산봉은사화엄판전신건기(京畿左道廣州修道山奉恩寺華嚴板殿新建記)’ 및 ‘화엄판전번와축장중수록(華嚴板殿燔瓦築牆重修錄)’과 2012년 수리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‘화엄판전상량문(華嚴板殿上樑文)’ 등을 통해 창건 및 중수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.
- 본 건물은 경관을 보관하는 장경각(藏經閣)인 동시에 예불을 드리는 불전(佛殿)으로, 경관보관 및 예불 기능을 병용하기 위하여 독특한 창호 구성을 갖추는 등 건축적 희소성이 있다.
- 정면 어칸 처마에 걸쳐 있는 현판에는 ‘판전(板殿)’ 두 글자가 양각되어 있는데 추사 김정희(1786~1856)의 글씨이며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3호로 지정되어 있다.
- 상기의 사유로 “봉은사 판전(奉恩寺 板殿)”은 ‘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’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.

2.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계획

- 지정종별 :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4호
- 지정명칭 : 봉은사 선불당(奉恩寺 選佛堂)
- 문화재 지정 현황 : 선불당 건물 1동, 토지 1필지(총 344.3㎡)

지정대상	지번	지적(m2)	지정 수량 · 면적(m2)	소유자
봉은사 선불당	강남구 삼성동 73	-	1동	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
토지 (선불당 점유 부분)	"	61,428.0	344.3	
	합계	총 1필지	344.3	

- 보호구역 조정계획 대상 : 토지 총 4필지(총 65,675.3㎡)

조정 전				조정 후			
지 번	지 적 (단위:㎡)	지정면적 (단위:㎡)	소유자	지 번	지 적 (단위:㎡)	지정면적 (단위:㎡)	소유자
강남구 삼성동 73	61,428.0	61,083.7	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	강남구 삼성동 73	61,428.0	60,873.0	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
강남구 삼성동 73-1	1,722.2	1,722.2		강남구 삼성동 73-1	1,722.2	1,722.2	
강남구 삼성동 73-2	2,765.4	2,765.4		강남구 삼성동 73-2	2,765.4	2,765.4	
강남구 삼성동 73-3	314.7	314.7		강남구 삼성동 73-3	314.7	314.7	
합계	총 4필지	65,886.0		합계	총 4필지	65,675.3	

-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계획도면 : <별첨1> 참조
- 공고 사유
 -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4호 “봉은사 선불당”의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“봉은사 판전” 이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계획됨에 따라,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조(정의) 1항 3호에 의거 기존 보호구역 지정면적에서 “봉은사 판전”의 점유면적을 제외함

3. 문화재 지정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

- 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
 - 문화재보호법 제74조(준용규정) 제2항,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(허가사항) · 제21조(허가기준) · 제22조(허가사항의 취소) · 제24조(신고사항) · 제25조(행정명령 및 조치), 제49조(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)·제50조(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),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(허가신청) · 제19조(경미한 행위의 범위)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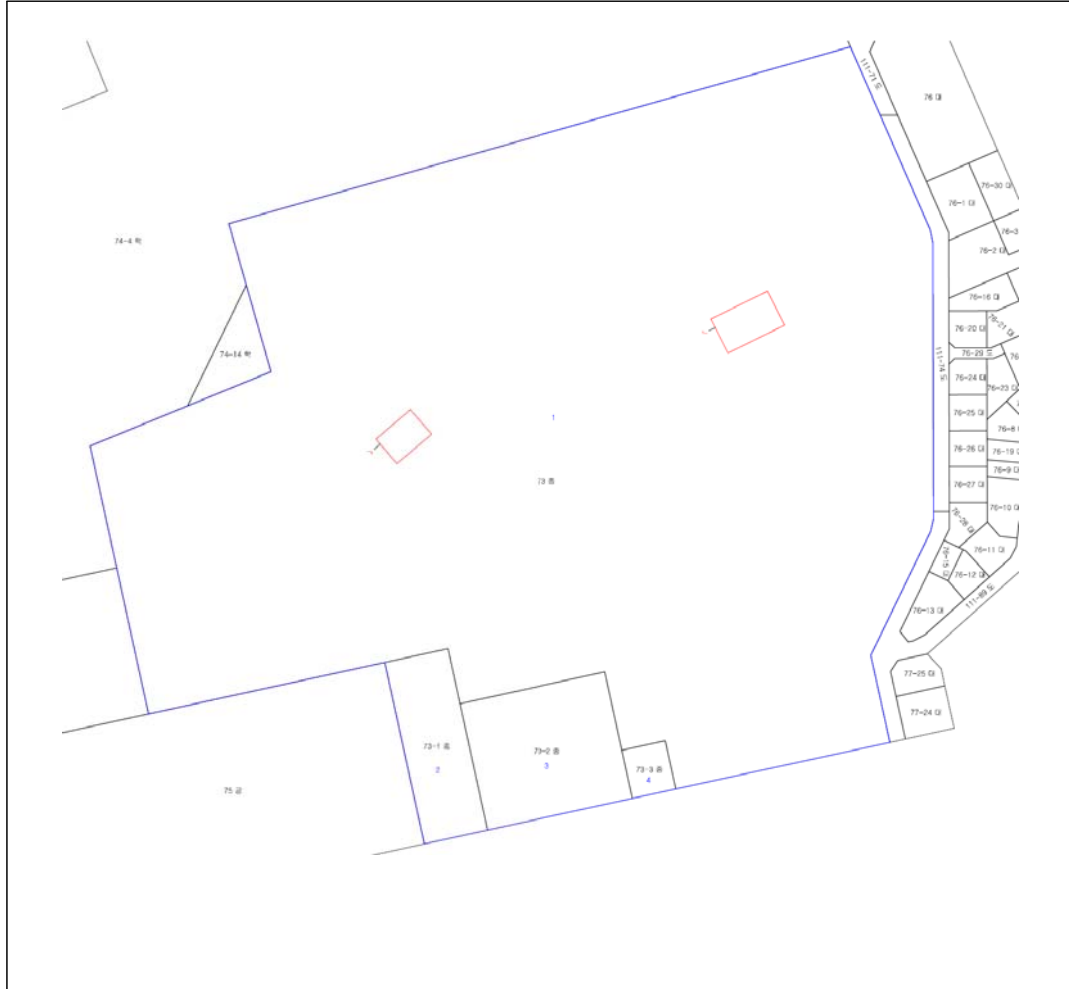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규정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함)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함. 다만,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화재, 일반묘역,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,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함

4. 의견제출 방법 안내

- 제출기간 : 공고일로부터 30일간
- 제출장소
 -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(담당자 : 김기훈)
 - ① 전화 : (02) 2133-2631
 - ② 팩스 : (02) 768-8873
 - ③ 우편 : (04515)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
 - 강남구청 문화체육과
 - ① 전화 : (02) 3423-5938
 - ② 팩스 : (02) 3423-8839
 - ③ 우편 : (06090)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
- 제출방법 :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
- 기재사항
 - 의견 제출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 - 유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(02-2133-263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 1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계획도면



범례	명칭
	봉은사 판전
	봉은사 선불당
	보호구역

구분	소재지	지적(㎡)	지정면적(㎡)
문화재	강남구 삼성동 73 ㄱ	61,428.0	210.7
	강남구 삼성동 73 ㄴ	61,428.0	344.3
보호구역	강남구 삼성동 73 1	61,428.0	60,873.0
	강남구 삼성동 73-1 2	1,722.2	1,722.2
	강남구 삼성동 73-2 3	2,765.4	2,765.4
	강남구 삼성동 73-3 4	314.7	314.7
	총계	총 4필지	65,675.3